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2437호)

제안 설명



2021. 6.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을 앞둔 시민을 격려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함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영지원금은 10만 원 이내의 서울특별시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입영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입영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으로 하고 장교와 부사관은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그밖에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영지원금의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쯤록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과 동시에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